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과소관)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1992. 3. 7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
-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 76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3. 5)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정태현)

가. 제 안 이 유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체 제정되었고, 의료기사법중 안경업소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 에서 시장,군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였던 위임조례의 항목을 삭제하고
- 안마사 자격인정과 자격증 교부 권한의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위임조례를 삭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조치.

나. 주 요 골 자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폐지로 관련사무의 위임조례 삭제
-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안경업소 관련업무가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조례 삭제
- 안마사 자격증 교부 권한위임 근거규정 불명으로 동업무를 도지사 업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위임조례 삭제
- 위임사항 16건이 삭제되어 86건에서 70건으로 줄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 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보건과 분야 일련번호 32번부터 40번까지 9건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삭제되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4(안경업소의 개설등록)항이 도지사에게 시장, 군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일련번호 69번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대체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것임.
- 나. 안마사 자격인정은 도지사 권한이나 자격증 교부는 시장, 군수에 위임 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여 위임조례 일련번호 68번을 삭제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